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을 추진 받을 경우 그 당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퇴직금규정과 같은 취업규칙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중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추인을 포함한다)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도 되나 그러한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이는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사후에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당시에는 없었다가 그 후에 설립되었거나, 그 개정으로 불이익을 입은 근로자들 중 일부는 추인 당시 승진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로 있어서 그 개정으로 불이익을 입은 근로자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Q 상여금 지급제한규정이 취업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을 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 어느 규정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A 상여금에 대하여는 법령에 별도로 정한바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위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각각 상여금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특별히 취업규칙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중도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경우 중도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는 그 동안의 지급 관행이나 양 규정의 제정 시기,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적이나 단체협약상 상여금 규정이 취업규칙상 상여금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상 관련 조항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됨.

☞ 한국중합노동법원한술사무(031-877-738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구 민법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하지 않은 자의 지위】

Q 저의 부친은 제가 태어났던 1957년 가을에 甲소유의 대지 50평을 백미 57마에 매수하여 가옥을 신축, 독자인 저와 저의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살다가 1984년 1개월 간격으로 부모님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아버지 명의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음에 이용하여 乙에게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제가 甲과 乙을 상대로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찾으려면 어떤 법적수단을 강구해야 하는지요?

A 민법 부칙 제10조에서 "본법 시행일(1960.1.1)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64.12.31)"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친은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위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매매는 유효한 것이므로 매수인인 위 부친은 甲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9.1. 92다24851), 또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할것입니다(대법원 1992.7.24. 91다40924).

그런데 甲이 이와 같은 귀하의 부친을 위한 등기청구이행이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다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므로, 귀하는 甲을 배임죄로 고소하여 甲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乙명의로 경료된 이전등기에 대하여 乙이 甲에게 이종매매하도록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10.25. 96다29151)

그러므로 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었다면 귀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고, 다만 甲을 상대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 민족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고객지원과장 **노상곤**



Q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A 1전기사용장소로 구분되는 1건물 또는 1구내의 전기사용 계약 전력 합계가 100KW 미만은 전주나 도로 등에 설치한 한전변압기를 이용하여 저압(220V 또는 380V)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1전기사용장소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일 경우에는 고객 소유의 변압기를 설치하여 특별고압(22,900V)으로 전기를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단, 1전기사용 장소내 2개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되고 각각의 계약전력이 100KW 미만으로서 1전기사용 장소 계약전력의 합계가 200KW 미만일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Q 넓은 공장 구내에서 건물별로 전기 인입이 가능한지요?

A 공장이나 학교와 같이 여러 동의 건물과 넓은 구내가 1전기사

용장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구내의 계약전력 합계에 의해 저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되며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는 여러 동의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1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1전기사용장소라 하더라도 전기사용자가 달라서 1전기사용 장소내에 2개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단위로 인입전선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건물 밀집장소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단위가 다르더라도 연결인입선이나 공동인입선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등 1건물내 2이상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공동인입선으로 공급합니다.

☞문의 : 포천지점 고객지원과(031-539-0231)

의·학·상·식

진단검사의학과장 **민도식**



Q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맞나요?

A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점점 진행이 되어 연골과 관절에 손상을 초래하며, 심하면 관절에 강직과 변형을 초래하여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이기도 하다. 단순히 관절에만 통증을 일으키는데 그치지 않고 전신(심장, 폐 등)에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전신질환이며 서서히 관절에 파괴를 야기하는 진행성 질환이기에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손목, 손가락의 안쪽 마디, 무릎 양쪽에 대칭적으로 병이 발생되며, 아침에 일어나면 침범된 관절이 뻣뻣

한 느낌이 드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이다. 급성 염증이 존재할 경우 관절이 부어 오르고 열이 나며 누르면 통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많은 관절염이 그렇지만 주로 여자(70~80%)에서 많이 나타나며, 대개 30~50대 연령층에서 많이 관찰된다. 인타갑지만 아직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인(病因)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되지 있지 않다.

치료로는 크게 약물요법, 물리치료, 운동요법을 들 수 있겠다. 통상적으로 관절염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몸이 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약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기에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후 적절한 투약이 이루어진다면 가지고 있던 우려가

오хла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물리치료나 운동 용법 또한 약물치료와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규칙적으로 이를 실천한다면 관절염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추천할 만한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자전거타기 등이 있다. 운동의 강도는 환자 본인의 질환 상태에 알맞게 조절이 되어야 하며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너무 무리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관절이 많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관절로 사용하기 어렵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공관절) 치료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습게 보고 무시할 만한 나약한 친구도 아니요 그렇다고 막대한 두려움으로 공포의 대상이 될 불량한 친구도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자와 전문의의 함께 손 잡고 꾸준히 치료를 해 나간다면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50)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남편과 대화가 점점 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서로 대화를 하고 싶으시군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는 절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등하는 부부의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배우자의 성격이

나 못마땅한 점을 고치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치려는 것보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몇 배의 에너지를 투입 하지만 절대로 사람은 어떤 철학이나 고매한 이론이나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야 하며 상대방을 고치는 것보다 차라리 나의 태도를 고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갈등하는 부부의 두 번째 특징은 비교 게임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친구나 동료, 이웃의 남편과 아내와

자신의 배우자를 자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모나 재정적인 능력이나 삶의 스타일을 비교해서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열등감과 좌절감의 상처를 남기게 합니다.

행복이란 비교해서 얻어지는 만족이 아니라 나의 나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으며 성공이란 남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 사는 것, 나의 생각대로 바꾼다는 것은 누가 나를 바꾸려고 할 때 강하게 거부하는 것처럼 오히려 화를 부르지만 배우자의 결점과 기이한 성향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며 포용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 하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과 배우자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문의 :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타 지역에 공장을 분양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후 사업이 여의치 않아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처리.

A 귀 질의와 유사사례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무계산서를 교부받아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존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건물 분배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재화를 공급한 후 외상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할

인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

A 200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금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금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 즉 매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러한 매출 할인액이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시고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정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쳐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해 월중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의 : 세무사 박운중(031-872-6116)

이제는 한우도 품질을 비교하세요

암소할마리·생고기 전문점

명품관(구. 용궁마당) 탄생



주메뉴

- 한우 특수부위
- 한우 갈비살
- 한우 버섯불고기
- 곰탕 · 우거지탕
- 한우 등심
- 한우 육사시미
- 돈왕갈비
- 냉면
- 한우 생고기 모든
- 한우 육회
- 생삼겹살
- 육회 비빔밥

■ 포천시 신북면 고일리 10-5 ■ 예약문의 : 031)531-8080 H.P : 011-417-5051